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엠메이드대부(유)

2. 조치일 : 2021. 2. 26.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⑴ 채권매각 관련 내부통제 기준 미운영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채권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각채권 사후관리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다 음 >

2016.4.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권을 매각한 후, 그 중 일부 채권(채무자 : 김□□ 등 3인)에 대해 채권자 변경 절차((유)엠메이드대부→(유)○○○○○○대부)를 경료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5.2.~2020.1.31.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지급액이 (유)엠메이드대부 계좌로 오류 입금됨(2020.2.28. 신용회복위원회에 전액 반환하였음)